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87
----------	-------

발의연월일 : 2025. 8. 21.

발 의 자 : 김기현 · 김미애 · 김정재
박성민 · 조지연 · 서지영
김선교 · 추경호 · 성일종
한지아 · 김대식 · 조정훈
박성훈 · 서일준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 주요 정보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생략)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 ⑫ (생략)	③ ~ ⑫ (현행과 같음)